#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87 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주철현·홍성국·양정숙

김병주 · 이용우 · 임호선

신현영 · 장철민 · 한준호

오영환 · 이원택 · 김민철

최혜영 · 임오경 · 김남국

이성만 • 이수진 • 윤영덕

최종윤 · 정청래 · 장경태

오기형 의원(2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

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9조제 1항).

법률 제 호

##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감안"을 "고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	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
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	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
제9조(해양치유지구의 지정·변경)	제9조(해양치유지구의 지정·변경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	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	
을 <u>감안</u> 하여 해양치유지구를	<u>고려</u>
지정할 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